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27

발의연월일: 2021. 6. 9.

발 의 자 : 권은희·강은미·이태규

최연숙 • 박덕흠 • 배진교

양정숙 • 이은주 • 류호정

윤재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운영하면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대한민국 군인이범한 죄의 경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사법원은 일반법원과는 달리 법관이 아닌 장교가 심판관이 되어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나 관할관이 판결에 대하여 확인 후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는 등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많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되도록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본적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만 재판권을 가지도록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을 개정하는 한편, 이와 연계하여 평상시에 군인이 범한 죄의 경우에는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죄수

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직무와 권한을 검찰에게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다목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의안번호 제1 07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가목·나목"을 "가목부터 다목 까지"로 한다.

다.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범 죄로서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사법원의 관할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죄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	제4조(검사의 직무) ①
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1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	
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u> <신 설></u>	다. 「군형법」 제1조제1항부
	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
	람이 범한 범죄로서 「군
	사법원법」에 따른 군사법
	원의 관할사건에 해당하지
	<u>아니하는 범죄</u>
<u>다</u> . <u>가목·나목</u> 의 범죄 및 사	<u>라</u> . <u>가목부터 다목까지</u>
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	
는 범죄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